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7. 7 선고 2020가합1032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개명 전: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서정식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공

담당변호사 김현성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7. 7.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2018. 11. 12. 체결된 95,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 4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D 사이에 2018. 11.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247,112,3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7,112,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D은 2012. 11. 14. E 주식회사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독서실’이라고 한다)의 개점과 관련한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부터 2018. 10. 1.까지 이 사건 독서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2013. 6. 10. E 주식회사로부터 G에 관한 모든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다.

2) 피고는 1998. 7. 15. D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를 이어오다가 2021. 3. 11.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제1차 소송

원고는 2016. 6. 15. D을 상대로 이 사건 독서실의 공사대금과 상호 무단 사용에 따른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8. 8. 14. ‘D은 원고에게 82,620,3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08573). 이에 대하여 D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9. 8. 14. ‘D은 원고에게 67,832,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8나64903, 이하 ‘이 사건 제1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 위 판결에 대하여 D이 상고하였으나, 2019. 12. 24.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다266805, 이하 ‘이 사건 제1 소송’이라고 한다),

다.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D은 2016. 6. 28. 이 사건 제1 소송의 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후, 2016. 7. 8. 부천시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I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누나인 H 앞으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I 아파트 매도 및 D의 무자력

- 1) D은 2018. 10. 19. K에게 이 사건 I 아파트를 388,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K으로부터 계약금 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2) D은 2018. 11. 12. 11:16경 K으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348,000,000원 중 일부인 213,118,228원을 지급 받은 후, 같은 날 11:22경 H에게 11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11:27경 피고에게 9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H은 같은 날 11:30경 피고에게 1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3) D은 2018. 11. 12.경 채무초과상태였다.

마. 피고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 지급

- 1) 피고는 2018. 10. 22. L로부터 부천시 M단지 N호(이하 '이 사건 M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27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L에게 계약금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2) 피고는 어머니 O로부터 2018. 11. 5. 30,000,000원, 2018. 11. 7. 2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고, 2018. 11. 9.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 3) 피고는 2018. 11. 12. L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금 24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와 D 사이의 제2차 소송

원고는 2019. 12. 26. D을 상대로 이 사건 독서실의 상호 무단 사용에 따른 위약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합105541), 위 법원은 2020. 6. 24. ‘D은 원고에게 2014. 8. 30.부터 2018. 10. 1.까지 상호 무단 사용으로 인한 위약금 179,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7. 1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제2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6, 9,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 2 판결금 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시점인 2018. 11. 12. 이후에 성립되었으나, 2018. 11. 12. 당시 이미 이 사건 독서실의 시설공사 및 상호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1 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이 성립될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제1 판결금 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제2 판결금 채권은 이 사건 제1 소송에서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한 위약금 중 나머지 부분을 청구한 것으로서 법률적 쟁점이 서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 2 판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D이 이 사건 I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H의 계좌를 거쳐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115,000,000원

원고는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허위의 채무에 기한 것이므로, D이 H에게 115,000,000원을 송금한 것은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H의 계좌를 거쳐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H으로부터 D과의 혼인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11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제7, 10호증, 을 제4, 10,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P은 'D이 H에 대한 허위의 근저당권부채무를 부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고 고발하였는데, 2020. 11. 30.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20형제2070호), ② 이에 대하여 P이 항고하여 2021. 2. 2.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나[대전고등검찰청 2021 고불항(청주) 제4호],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2021. 4. 19. 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2021형제258호), ③ 원고는 피고와 D이 실질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혼의사도 없기 때문에 이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H으로부터 11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와 D이 2021. 3. 11. 협의이혼을 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가 2020. 3. 19. H에게 4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H으로부터 차용한 115,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피고에게 115,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D이 이 사건 I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피고의 계좌로 곧바로 이체된 95,000,000원

원고는 피고가 D으로부터 95,000,000원을 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D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95,000,000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이 피고에게 95,000,000원을 지급한 2018. 11. 12.은 이혼시점(2021. 3.

11.)으로부터 약 2년 4개월 전인 점, 피고는 2018. 11. 12. D과의 혼인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H으로부터 115,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와 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95,0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D은 채무초과상태에서 95,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D 사이에 2018. 11. 12. 체결된 95,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희, 판사 오승희, 판사 임현화